

# 2020년 가조면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9. 8. ~ 9. 11. / 4일간
- 감사범위 : 2017. 9. 16.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 II 감사결과

### 1] 예산회계분야

#### 1) 신용카드 발급, 보관·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용카드별로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미작성, 관리공무원 교체 시 지방자치구매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미이행

#### 2) 세입세출외현금 잔고 불일치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할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20. 8. 21. 기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잔고원과 실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잔고가 불일치

#### 3]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산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

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 「☆☆세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하자보증서 및 하자보증각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업무 소홀**

-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공제) 가입 여부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준  
계약서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계약
- 공사현장에서 임대장비의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에 따른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2) 건설분야**

#### **1) 건설공사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확인 소홀**

- 「○○○○마을 안길 등 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20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 시 상기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기관과의 기술지도 협약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관련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처리

#### **2) 건설공사 운반거리 확인 소홀 및 부적정**

- 「◇◇◇◇족구장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설계내역과 실제 사토  
장의 사토거리와 차이가 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 **3)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 「△△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  
용불가” 내역에 해당되는 “공사안내간판” 등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을 하지 않고 과다 지급

#### 4)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 「▲▲노인정 보수공사」 등 32건에 대하여 준공 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중량계근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준공서류 보완제출 미요구,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를 소홀로 \*,\*\*\*천 원을 과다 지급

#### 5)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 「★★ 뒷뜰 농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직포를 미설치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천 원을 과다 지급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

#### 6) 건설공사 공사비 과다설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음에도,
- 「▲▲ 노인정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강관비계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임에도 계상, 「♠♠마을 공동시설 정비공사」는 목재데크 시공 시 각관을 이용한 명에 시공이 가능한 현장으로 잡철물 설치 단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량형강철골조 설치 단가로 산정하여 총 \*\*\*천 원을 과다설계

### 3] 세무분야

#### 1)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

-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문은 발송하였으나 재산세 직권등재 안내문 발송과 신고기한 경과 후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원 누락

## 2) 공장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누락

-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조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배를 중과세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 과세대장을 일반과세로 관리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음.

## 3) 가설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소홀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비과세하고 있으나 존치기한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축조신고가 완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비과세로 관리하여야 하며,
- 등재 후 비과세로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1년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과세하여야 함.
- 가조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치기한 1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원을 과세누락

## 4) 저장시설(수조)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누락

-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장누락 등으로 보통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 및 과세기준일부터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 가조면에서는 육상양식어업(수조식)으로 허가받은 양식장의 저장 시설(수조)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원을 과세누락

#### **4] 복지분야**

##### **1)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소홀**

- 2018년 및 2019년 상·하반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검토 및 정산을 하면서, 물품사진 미첨부 \*\*건, 거래내역서 미첨부 \*건 등 지출증빙서류가 미흡하게 제출되었으나 사후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업무 소홀

##### **2) 등록장애인 장애재판정 업무 소홀**

- 마OO의 장애재판정 기한일 3개월 이전에 재판정 실시 안내를 하여야 하나 1개월 전 안내, 사전안내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편 초래
- 박OO의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내 재판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3)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 업무 소홀**

- 2018. 8월부터 현재 감사일까지 사례관리 종결자 정OO 등 9명에 대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종결 후 9개월 내 2회에 걸쳐 방문상담 실시하여 상담내용을 상담·관리 시스템의 모니터 상담관리에 등록하고, 만족도조사도 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 **4)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필요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박OO 등 3세대에 대해 급여관리자 미지정, 권OO의 급여관리자 지정내역을 행복이음 시스템에 미등록

## 5] 산업·주민분야

### 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現.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20. 5. 1.) 제5조(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가조면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2017년 16필지 \*\*\*,\*\*\*원, 2018년 4필지 \*\*\*,\*\*\*원, 2019년 1필지 \*,\*\*\*원 등 직불금을 지급

### 2)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규농가 제출서류 미첨부

-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신규대상자는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2019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에도 20농가 36필지 60,979㎡에 대하여 신청서류 보완 없이 신규대상자로 확정하고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3) 사망자 인감대장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에 따르면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직권말소 절차를 처리해야 함에도
- 사망자 박OO 등 4인에 대한 인감대장을 이전 및 직권말소 하지 않는 등 사망자의 인감대장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4)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소홀

- 2017년 9월 16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름에도 전입자 및 전세대주 확인 또는 사실조사 없이 44건의 전입신고를 처리
- 전입신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 전입신고서 상의 위임장란이 누락되어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2건의 전입신고를 처리하였으며,
- 전입신고서 사후확인 시 세대주(세대원)에게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1건의 사후확인을 소홀히 함.

### 6] 기타분야

#### 1) 공용차량 대장관리 소홀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는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신청’을 하고 차량관리부서는 신청에 따른 ‘배차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 사용 후에는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가조면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해 2019년 12월 \*\*일 마지막 배차신청 이후 2020년 9월 감사일까지 배차신청 및 운행기록 정산을 하지 않아 운행거리 및 연료정산 기록을 누락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절차 미이행

- 2019. 12. 16. 가조면청사 외벽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설치 후 2020.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표지판 미설치

#### 3)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사항 미이행

-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7. 9. \*\*.부터 2020.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관리기관으로부터 총 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사항을 통보받은 바 있음에도 2건의

통보사항(미신고 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정한  
처분사항 미이행

#### **4) 민방위대 교육대상자 면제처리 부적정**

- 가조면에서는 2017년 9월 16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교육 면제처리 업무를 하면서 내부 보고·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면제처리(3건)

#### **5)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에도 「온천단지 내 잔디 및 보도블럭 잡초제거」 등 64건을 시행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